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TDF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사항: ①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강지혜)

②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3. 3. 3.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9. 30. 기준	2023. 1. 31 기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10. 31. 기준	2023. 1. 31 기준
과세	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계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세계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 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	모투자신탁의 연혁 업데이트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신 설>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3. 3. 3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강지혜)
------------------------------------	----------------	---------------------------------------	---



신탁의 연혁]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10. 31 기준</u>	<u>2023. 1.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모투자신탁의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삭제	<u>2022. 10. 31 기준</u>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강지혜	<u>2023. 1. 31 기준</u> <삭 제>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10. 31 기준</u>	<u>2023. 1.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모투자신탁의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삭제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신 설>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강지혜 (<u>2022.06.03~2023.03.02</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생 략) 나)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현행과 같음) 나)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 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

		① ~ ⑤(생략)	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생략) 나) (생략)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9. 30. 기준</u>	<u>2022. 12. 30.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항] * 공제제도 : <u>첨부 참조</u> * 분리과세 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u><신설></u> <u>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u>	[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항] * 공제제도 : <u>첨부 참조</u> *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u>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u> - <u>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u>

		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추가>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세법 개정 사항 반영	③ 세액공제(2015.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세액공제(2023.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10. 31 기준	2023. 1. 31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10. 31 기준	2023. 1. 31 기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산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	-------------------	-------------------------	-------------------------

<p>사항 나. 수시공시</p>		<p>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p> <p>① (생략)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신설)</p> <p>③ ~ ⑩ (생략)</p>	<p>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	--	--	---

[첨부] * 공제 제도

[변경 전]

<p>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p>	<p>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p>	<p>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p>	<p>세액공제율</p>
<p>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p>	<p>400만원 (700만원)</p>	<p>600만원 (900만원)</p>	<p>15%</p>
<p>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p>		<p>300만원 (700만원)</p>	<p>12%</p>

※지방소득세 별도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 12. 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지방소득세 별도

<삭 제>

<신 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